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도봉)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10호
- 나. 제안자 : 김용석(도봉)의원외 9명
- 다. 제안일자 : 2017년 12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12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본 기금은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도모,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주민생활개선, 기존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해 교류창구 유지, 신뢰기반조성 기여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를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과 인도적인 지원인 기근, 질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호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현황

-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이하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금의 2017년도말 조성액은 180억 3천 1백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지출규모는 108억 7천5백만원 규모임.
- 다만, 전체 지출액 가운데 시금고 예치금 등을 제외한 순수 비용자성 사업비 예산규모는 시민교육과 시민공감대 확산 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을 위해 3억 5천만원, 민관 학술 및 소통 채널 운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 사업에 4억원,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추진과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사업 공동 추진 등 남북 도시교류 사업을 위해 56억 5천만원 등 모두 7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0,875,411	11,640,970	△765,559	합 계	10,875,411	11,640,970	△765,559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포함)	3,341,200	3,341,200	0	사업비	7,000,000	5,500,000	1,500,000
예치금 회수	7,206,238	7,965,897	△759,659	기본경비	100,000	79,500	20,500
전입금	100,000	-	100,000	예탁금	-	3,000,000	△3,0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227,973	333,873	△105,900	예치금	3,775,411	3,061,470	713,941

- 지난 2010년 5월 시행된 5·24 대북 조치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대북 교류지원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과거와 같이 활발한 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년 실제 예산 집행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으나, 시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 기금용도의 확대(안 제4조제5호 신설)

- 개정안은 안 제4조제5호를 신설해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함.
- 시는 2004년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5·24 대북 조치 이후 정부의 불승인에 따라 이와 같은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임.
- 특히, 통일부의 정책에 따라 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민간 대행단체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이긴 하지만 조례 제2조제1항과 제4조 제1호¹⁾를 근거로 의약품 지원이나 수해구호 지원 등의 대북

1)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

인도적 지원사업도 과거에는 제한적으로 시행해 왔음.

<서울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시기	지원내용	소요비용 (백만원)	대행단체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06.5	위내시경, X-RAY 등 의료장비 지원	349	(사)장미회
	'07.8	만능수술대, 자동인공호흡기 등 지원	496	
	'08.11 ~'08.12	X-RAY, 병리검사시약, 수액제조설비 등 지원	790	
	'09.12	의약품, 수액, 의료소모품 지원	306	
북한 수해구호 지원	'06.8	항생제, 수액, 구급의료세트 등 지원	200	(사)장미회
	'07.8	항생제, 피부질환치료제 등 지원	297	
	'10.10	밀가루 등 구호물품 지원	235	(재)새누리좋은 사람들
기타 인도적 지원	'05.2	제과원료(설탕, 밀가루, 분유 등) 지원	1,030	(사)남북민간교류 협의회
	'09.10	옥수수(옥수수 알갱이 2,500톤) 지원	1,000	(사)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합 계			4,703	

- 판단컨대 이미 기존 조례에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는 각종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남북교류협력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그럼에도 개정안과 같이 각종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할 경우 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사업의 용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